#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 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6914

제안연월일: 2024. 12.

제 안 자: 정무위원장

#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
2203772	강민국의원	2024.9.6.	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7차 정무위원회 (2024.11.12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
2204221	김상훈의원	2024.9.24.	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에 회부

- 가.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4.11.25.)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- 나.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9차 정무위원회(2024.12.03.)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

#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FATF(Financial Action Task Force, 국제자금세탁방지

기구)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 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.

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・법인・단체 외에 그의 직・간접 소유・지배 법인까지 확 대하는 한편,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・간접 소유·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 임(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).

##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 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 여 고시하려는"을 "제1항에 따라 지정 및 고시하려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 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"를 "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 정하여 고시한 자(이하 "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"라 한다) 및 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·간접 소유·지배 법인(이하 "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"라 한다) 이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금융거래등제한대상 자"를 "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(이 하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"를 "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"로,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"을 "그 지 정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"을 "지

정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"를 "지정금융 거래등제한대상자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(이하 "대량살상무기확산등"이라 한다)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"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·법인·단체"라 한다)와 그의 직·간접 소유·지배 법인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있다.

⑨ 제1항 및 제4항 중 "소유·지배 법인"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·법인·단체 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총출연재산·총발행주식·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말하다.

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당사자"를 "당사자 또는 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"을 "지정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고시된 자"를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"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"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"을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·고시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본다.

#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4조(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
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
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
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
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
(이하 "대량살상무기확산등"이
라 한다)과 관련되어 있는 것
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
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
호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(이하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"라 한다)로 지정하여 고

1. • 2.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 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량살상무

제4조(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 정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(이하 "대량살상무기확산 등"이라 한다)과 관련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 인 또는 단체(이하 "대량살상 무기확산등 관련 개인 · 법인 · 단체"라 한다)와 그의 직·간 접 소유ㆍ지배 법인을 제4항제 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 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
-----.

\_\_\_\_\_

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받지 아니하고 지정·고시할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③ (생 략)
-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
 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(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허가신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.

 -
 _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------<u>지정금융거래등</u> 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(이하 "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"라 한다) 또는--

- 1. · 2. (생략)
- ⑤ (생략)
-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.
- ⑦ (생략)
- ⑧ 금융위원회는 <u>금융거래등제</u>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,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

<u><신 설></u>

<u>.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지정금융거래</u> 등제한대상자
,
<u>지정</u>
① (현행과 같음) ⑧지정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
⑨ 제1항 및 제4항 중 "소유·
지배 법인"이란 대량살상무기
확산등 관련 개인・법인・단체
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

제4조의2(이의신청 특례)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1. 제4조제1항에 따른 <u>금융거래</u><u>등제한대상자의 지정</u>: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30일
-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5조(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) ① 금융회사등(그 종사자를 포함한다)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·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	자가 총출연재산・총	<u>발행주식</u>
	・총출자지분의 100분의	의 50 이
	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	법인이
	나 사실상 영향력을	행사하는
	법인 등 대통령령으로	정하는
	법인을 말한다.	
제	세4조의2(이의신청 특례)	①
	당사자 또는 금융거래	등제한대
	<u> 상자</u>	
	1	지정
		<del></del>
	2. (현행과 같음)	
	② ~ ④ (현행과 같음	
제	,	
제	② ~ ④ (현행과 같음	
제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세5조(금융회사등 및 그	
제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세5조(금융회사등 및 그	
제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세5조(금융회사등 및 그	종사자 
제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에5조(금융회사등 및 그 의 의무) ①	종사자 
제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에5조(금융회사등 및 그 의 의무) ① 	종사자 
제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에5조(금융회사등 및 그 의 의무) ① 	종사자 

- ② · ③ (생 략) 제6조(벌칙) ① (생 략)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2. (생략)
  - 3.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 상자의 상대방
  - 4. 5. (생략)
  - ③ ~ ⑦ (생 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.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
사실
4.・5. (현행과 같음)